

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서류

■ 구비서류 [모집공고일 2026.05.22(금) 이후 발행분] ※ 인감증명서는 “본인 발급용”, 주민등록등·초본은 “전체포함”, 가족·혼인관계증명서 “상세” 제출 확인

구분	서류유형 필수 해당	구비서류	기준	주요확인사항
공통 서류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주택공급계약용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
	○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“상세”로 발급
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(본인 출생년도~모집공고일)
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 복무기간 확인
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	○	전세피해자 확인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관련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
신혼 부부	○	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	본인	• 건분주택 비치
	○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
	○	소득 증빙서류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의 소득입증서류)
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	• 건분주택 비치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
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
	○	부동산 소유현황 및 공시가격 증명 서류	본인 및세대원	•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(부동산 자산 33,100만원 이하 확인)
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재혼 배우자 전혼자녀 부양가족 산정 시(신청자 본인 등본 등재 한함)
	○		직계비속	•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“상세”로 발급 •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신생아 자녀 기준 “상세”로 발급
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또는배우자	•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,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 외 불가) 제출
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		• 건분주택 비치, 임신의 경우
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
대리인 추가서류	○	위임장	본인	• 건분주택 비치 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및 대조 必)
	○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주택공급계약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대리인 본인 확인
주택 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		해당자	•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해당자	• 무허가 건물확인서 / •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
			해당자	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/ • 당첨사실 소명 서류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※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5.22)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

■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발급기준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,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※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있는 전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('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,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 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(원본 : 직인날인)	①, ② 해당직장
	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	①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지급명세서 ※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※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에 해당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자영업자	일반(간이)과세자/면세사업자	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	①,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	신규사업자 등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* 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*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/등기소 또는 홈택스
	법인대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② 전년도 재무제표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 ⑥ 원천징수이행명세서(또는 배당금 지급 명세서 또는 배당금 원천징수영수증)	①, ②, ⑤, ⑥ 해당직장 ③ 세무서 또는 홈택스 ④ 등기소
	보험모집인/방문판매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②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해당년도 간이 지급명세서 ※ 수입 발생기간이 단기간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국민기초 생활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행정복지센터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	① 전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(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) ※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,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,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※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,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 증명서	① 해당직장/세무서 또는 홈택스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전년도 1월 1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(견본주택에 비치) ② 사실증명서(소득이 없는 경우)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기타 (근로자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)		① 출산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신청서(확인서)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(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)	①, ② 해당직장

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

※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5.22)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

■ 자산입증 서류

구분	자산입증 제출서류(추첨제 신청자에 한함)			발급처
“부동산소유현황” 이 있는 경우	공동(필수)		① 부동산소유현황 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전국단위,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, ②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③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
	추가	주택을 소유한 경우	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	①, ② 행정복지센터,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, 일사편리(kras.go.kr)
		토지를 소유한 경우	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)	
		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	• 집합건물 :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*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) (서울시 : ‘ETAX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 외 건물시가 표준액 조회’에서 조회 결과를 인쇄) (서울시 외 : ‘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’에서 조회결과를 인쇄) • 집합 건물 외 건물 :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, ②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조회결과 ※ 소유 부동산이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	① 서울특별시 내 이택스 (etax.seoul.go.kr) 서울특별시 외 위택스 (www.wetax.go.kr) ② 행정복지센터,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, 일사편리(kras.go.kr)
		해당자	•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: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,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: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 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 소유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	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(www.eum.go.kr)
“부동산소유현황” 이 없는 경우	필수		① 부동산 소유 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※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‘부동산 소유 현황’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 ※ 발급방법 : 위택스 > 발급 >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> 지방세 미과세증명서(전국 단위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	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(www.iros.go.kr) ② 위택스

※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안내문에 반영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,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5.22.)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)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

※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5.22)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

■ 자산보유(부동산 소유)현황 발급

구분	내용	
발급대상	세대구성원 전원(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인증서 필요)	
발급절차	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 사이트 접속	
	② 등기열람/발급 → “부동산소유현황” 클릭	
	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	
	④ 부동산 소유현황 서비스 이용안내 동의 후 “확인” 클릭	
	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“검색” 클릭(주민등록번호 공개)	
	⑥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→ “확인” 클릭	
	⑦ 팝업에서 “확인” 클릭	
	“부동산소유현황” 이 있는 경우	“부동산소유현황” 이 없는 경우
	⑧ 결제화면으로 이동	⑧ 동일한 화면 하단에 “조회내역 없음” 표시
	⑨ 결제방법 선택 및 결제 진행	⑨ 해당화면 인쇄(Ctrl+P) 재산세 항목만 + 미과세 증명서(전국단위, 주택·토지·건축물) - 위택스
	⑩ 미열람보기 → “열람” 클릭	
	⑪ 부동산 소유현황 “인쇄” 재산세 항목만 +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전국단위, 주택·토지·건축물) - 위택스 ※ 아래 증빙서류 안내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 가격 합산	